

# 국세청 컨설팅으로, 가업승계의 마지막 퍼즐 맞추다!

- 국세청 2023. 6

## 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개요

-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중소기업 대부분이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그 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후대로 전수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
  - 이에 따라 가업승계는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고민하는 많은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, 정부에서도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꾸준히 확대\*해 왔습니다.
    - \* ('23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)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(500억 원 → 600억 원), 사후관리기간 단축(7년 → 5년)
  - 그러나 세제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고 정보도 충분하지 않아, 정부차원의 「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」을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\*로 기업들이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.
    - \* (중소기업 가업실태보고서, '22.8월) 가업컨설팅 및 정보제공(37.6%), 일시적 경영안정자금지원(31.6%) 順
- 이에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「가업승계 세무컨설팅」을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### |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내용 |

<b>가업승계 사전.사후요건 진단</b>
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별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과 사후에 지켜야 할 내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합니다.
<b>상시 자문서비스 제공</b>
가업승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.
<b>신속한 서면답변</b>
가업승계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.

## 2 지난해 추진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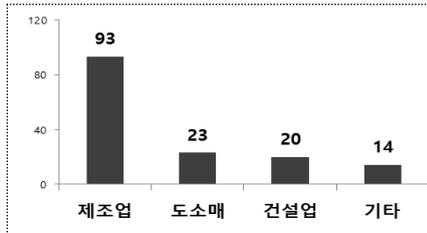
- (대상자 선정)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309개 기업이며, 우선 선정기준\*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별 심사를 거쳐 150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.

계	서울청	중부청	인천청	대전청	광주청	대구청	부산청
150(개)	24	22	25	11	14	30	2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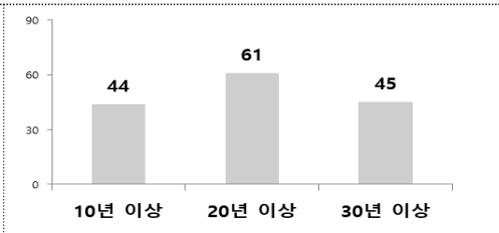
\* 모범납세자 등 성실납세기업, 중소기업컨설팅 대상자, 세금포인트 많은 기업 順

- 선정기업은 개인(18.7%)보다는 규모가 큰 법인(81.3%)이, 사후관리 중인 기업(6.7%)보다는 기업승계를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(93.3%)이 많았으며,
  - 업종별로는 제조업(62.0%), 사업영위 기간별로는 20년 이상(70.0%) 가업을 영위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.

〈업종별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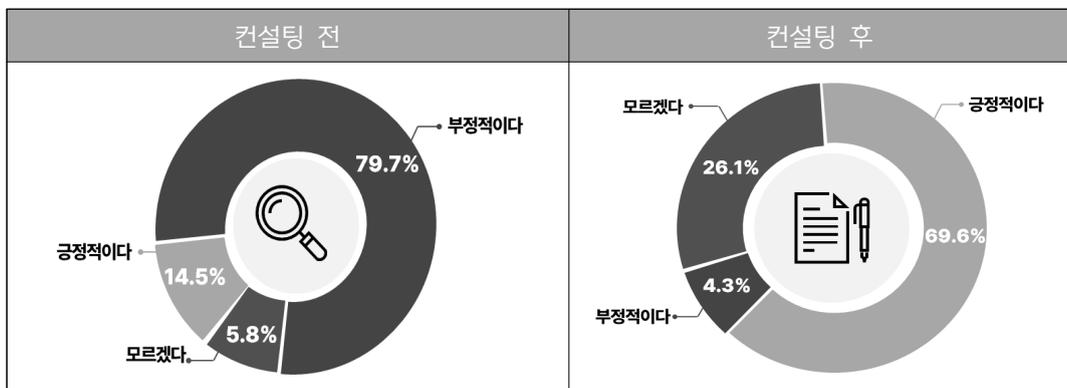
〈사업영위 기간별〉



- (컨설팅 실시) 컨설팅은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지방청 대면상담 혹은 전화상담 등 기업들의 선택에 따라 받기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,
  - 기업승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요건진단과 자문을 실시한 결과, 기업승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대폭 상승\*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.

\* 기업승계 가능성 긍정 답변 비율 : 컨설팅 전(14.5%) → 컨설팅 후(69.6%)

〈기업승계 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〉





□ (주요사례) 지난해 국세청이 제공한 구체적 컨설팅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###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단계 컨설팅

-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기업에게 현금으로 생산시설 투자하여 자산 비율조정 권유

#### 사례①

#### 가업자산 비율을 높이면 세제혜택이 커집니다

- ◆ (자문) 40년간 회사 경영에만 매진, 기업이 커 가면서 현금보유액도 늘어나고 있음. 가업승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?
- ◆ (진단) 현금을 과다보유\*하는 경우 일반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과다보유하면 세제혜택 감소
  - \* 직전 5개년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% 초과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 봄
- ◆ (컨설팅)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가업자산 비율을 높인 후 사전승계 할 것을 권유
  - ☞ “기업을 키워서 언젠가 자녀에게 승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,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다”는 (주)○○전자 사례

-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영자에게 비거주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없음을 설명하고 가업승계 전 자녀의 국내 이전 권유

#### 사례②

#### 해외에 자녀가 거주한다면 가업승계 전에 국내로 이전하세요

- ◆ (자문) 자녀가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해외법인의 현지 납품관리를 하는 등 가업에 종사 중인데 가업승계 가능하겠지요?
- ◆ (진단)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의 생활기반이 베트남이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
- ◆ (컨설팅)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주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가업승계 전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미리 자녀와 협의할 것을 권유
  - ☞ “해외에 살더라도 가업에만 종사하면 세제혜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는데, 미리 자녀의 국내 전입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겠다”는 ○○무역(주) 사례

- 사업확장을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업종추가를 계획하는 기업에게, 주업종이 변경되면 가업영위기간이 단절됨을 설명하고 별도 법인설립 등 중장기 전략 제시

**사례③**

**2가지 업종을 겸업한다면 업종간 매출비율을 관리하세요**

- ◆ (자문) 의약품 도매업을 10년 이상 운영, 최근 신약개발로 의약품 제조를 추가할 예정임. 향후 의약품 제조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 기업승계는 어떻게 될까요?
- ◆ (진단) 매출이 큰 업종이 주업종이며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하여야만 기업승계 세 제혜택 가능
- ◆ (컨설팅) 향후 제조 매출 증가하면 주업종이 도매에서 제조로 변경되어 기업영위기간이 단 절되므로, 제조업은 미리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유  
☞ “매출을 키워 사업을 확장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, 업종추가도 신중할 필 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감사하다”는 (주)○○약품 사례

**기업승계 후 사후관리 중인 기업의 컨설팅**

- 기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 반으로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기업에게 공동대표 권유

**사례④**

**기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였더라도 공동경영 가능합니다**

- ◆ (자문) 30년 경영한 회사의 주식을 2년 전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나, 자녀는 아직 경영 경협 이 부족해父가 직접 현업에서 대표이사로서 경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
- ◆ (진단) 기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 우려 있음
- ◆ (컨설팅) 대표이사 모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공동대표 제도를 활용하여子和 공동경영 권유 → 00억 원의 세금혜택 감소 방지  
☞ “아들에게 기업주식을 증여했으나 경영경험이 부족해서 걱정이었는데, 내가 생전에 옆에 서 좀 더 경영수업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”는 (주)○○자재 사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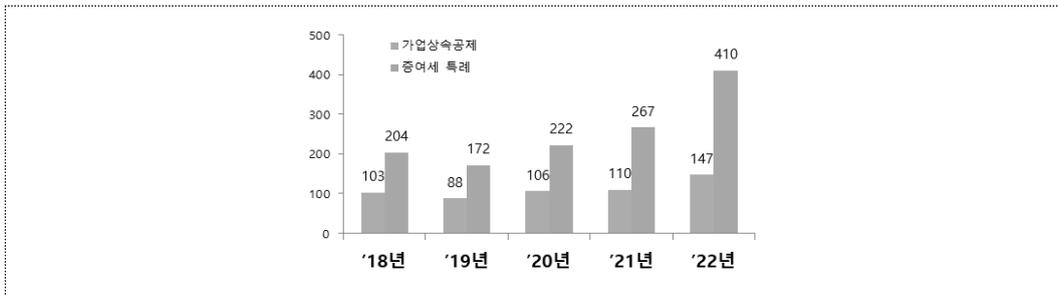
### 3 2023년 컨설팅 운영 계획

#### 1 컨설팅 대상인원을 확대합니다.

-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요건이 복잡하여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에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, 기업들도 컨설팅과 정보제공을 더 확대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적극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
- 또한, 각종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이용하는 기업도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

\* (가업상속공제) '21년 110명 → '22년 147명(33.6% ↑)  
 (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) '21년 267명 → '22년 410명(53.6% ↑)

<가업승계제도 이용실적(명)>



- 아울러,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했던 기업인 중 일부를 선정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.
- 이에 국세청은 일선 현장의 가동 가능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 전년대비 최소 20% 확대한 수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.

#### 2 수출기업과 장수기업 지원이 강화됩니다.

- 지난해 국세청은 '우수 중소기업 지원'이라는 명제 아래 컨설팅 대상자를 성실납세자 위주로 단순하게 선정한 측면이 있었으나,
- 올해에는 국정기조와 컨설팅 도입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조정하여 수출 중소기업과 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
- 먼저, 전체 수출기업의 96%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\*이 최근 수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컨설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합니다.

\* '21년 또는 '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이거나 관세청·코트라가 선정한 중소기업

- 또한,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, 불가피하게 컨설팅 대상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기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명문 장수기업 육성이라는 기업승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장수기업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#### |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기준 |

- (1순위)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
- (2순위)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
- (3순위) 기업상속 및 기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
- (4순위)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(최근 5년 이내)
- (5순위)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

### 3 기업이 원하는 경우 컨설팅 기간을 1년 더 연장합니다.

- 지난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기업승계 세무컨설팅을 1년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, 지난해 선정된 기업은 '23.8.31. 기간이 종료됩니다.
- 그러나 컨설팅이 진행되면서 기업승계가 특정한 시점에서의 진단만으로 부족하고 컨설팅 종료 후에도 추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
- 이에 국세청은 사후관리 서비스 일환으로, 기업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'상시 자문'과 '서면질의 최우선 처리'를 1년 더 제공할 계획입니다.

### 4 컨설팅 신청기간은 7월 한 달간입니다.

-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'23. 7. 1. ~ 7. 31.까지 홈택스 등\*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, '23.9.1.부터 기업승계 관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- \* 컨설팅 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 참조 [참고]

## 4 각종 도움자료 확대

- 국세청은 컨설팅 외에도 잠재적 기업승계 대상자가 세무상 막연한 불안함으로 기업승계를 망설이거나, 제도를 잘 몰라서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움자료를 대대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.
- (안내책자 개편) 기존의 제도설명을 더욱 충실히 보완하고 컨설팅 당시 자주 묻는 사안을 「쟁점별 문답자료」와 「사례별 세액계산방법」으로 정리하여 납세자가 사례를 토대로 제도를 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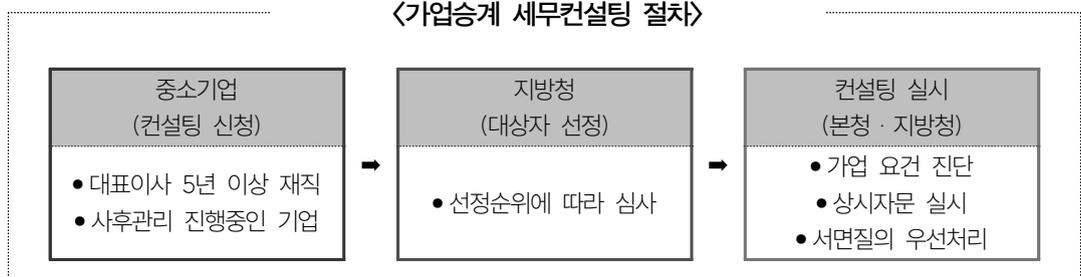
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아울러, 「가업승계 요건 검토표」를 제공하여 간단한 부분은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납세자가 직접 가업승계 요건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'23.5.4).
- (리플릿·동영상 최초제작) 또한,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컨설팅 제도의 핵심내용만 정리한 리플릿을 제작하고 세무서 민원실, 기업단체에 배포하여 누구나 쉽게 제도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'23.5.2).
- 이와 함께, 「명문장수 기업의 필수코스!」 시리즈를 동영상 3편(가업상속공제,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, 가업승계 세무컨설팅)으로 제작하고, 유튜브 등에 게재하여 최근 흐름에 맞게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였습니다('23.6.20.).

## 5 향후 추진계획

- 국세청은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와 다양한 도움자료를 지속해서 확대하겠습니다.
- 또한, 컨설팅 과정에서 수집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귀 기울여 제도를 개선하고,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,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.

### 참고 1 -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선정



- (신청대상)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,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\*이 신청할 수 있으며,  
\*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,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,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(1,500억 원 이

하), 독립성 기준 (조특령 §2① 1,3호) 충족

- (신청기간 및 방법) 기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'23.7.1. ~ 7.31.까지 홈택스\*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,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\* 홈택스 신청화면(접근 경로, 컨설팅 신청화면) [참고2]

※ '22년 컨설팅 미선정 기업은 새로 접수하지 않아도 '23년 신청자와 함께 심사

- (제출서류)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\*만 제출하면 되고,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(www.nts.go.kr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

\*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[참고3]

- (컨설팅 대상 선정) 신청기업에 대해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'23.8.31.까지 알려드립니다.

### |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기준 |

- (1순위)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
- (2순위)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
- (3순위) 기업상속 및 기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
- (4순위)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(최근 5년 이내)
- (5순위)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

## 참고 2 - 홈택스 신청방법
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: 신청/제출 > 일반세무서류 신청 > '민원명 찾기'에 “기업승계 세무컨설팅” 입력 후 조회하기 > 인터넷 신청



## 참고 4 - 2023년 기업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

-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세법이 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구분	기업상속공제	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
적용대상 확대	중소기업 및 중견기업(매출액 4천억 원 → 5천억 원 미만)	
공제(적용)한도 증가	기업영위기간	공제(적용)한도
	10년 이상 ~ 20년 미만	200억 원 → 300억 원
	20년 이상 ~ 30년 미만	300억 원 → 400억 원
	30년 이상	500억 원 → 600억 원
피상속인(수증자) 지분요건 완화	최대주주 & 지분 50% → 40%이상 (상장법인 30% → 20%이상) 10년 이상 보유	
사후관리 기간 단축	7년 → 5년	
사후관리 요건 완화	(고용 유지)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% 이상 & 7년 통산 100% 이상 → 5년 통산 90% 이상 유지 (자산 유지) 기업용 자산의 20%(5년 이내 10%) → 40% 이상 처분 제한	(대표취임) 5년 → 3년  (대표 유지) 7년 → 5년
	연부연납 기간 확대	기업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10년 또는 20년 → 모두 20년
납부유예제도 신설	중소기업의 기업재산을 양도·상속·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(증여)세의 납부를 유예	

## 참고 5 - 예상 질문 및 답변

### 1. 기업승계제도란 무엇을 말하나요?

☉ 기업상속공제란?

-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

☞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?

-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.



기업영위기간	공제한도
10년 이상 20년 미만	300억원
20년 이상 30년 미만	400억원
30년 이상	600

☞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.

- 피상속인(사망자) 요건
  - ①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
  - ② 기업의 지분을 40%(상장사 20%) 이상 보유
    - \* 개인기업. 법인기업 가능
- 상속인 요건
  - ①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
  - ② 상속세 신고기한까지(6개월) 임원으로 취임
  - ③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 취임

☞ 다만 승계 이후 5년간은 아래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.

※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

- ① 가업용 자산을 40% 이상 처분하면 안됩니다.
- ②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기업을 경영해야 합니다.
- ③ 상속받은 주식의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④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 고용인원(기준중급여액)'의 90%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.
  - \* 상속개시일 직전2개 사업현도의 평균

◎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?

-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기업을 살아 생전에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
☞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?

- 일반증여와 비교하여 공제액이 크고, 세율이 낮습니다.

구분	증여공제	세율
일반적인 증여	5천만원	10~ 50%
증여세 과세특례	10억원	10~ 27%

☞ 최대 600억원까지 저율과세(10~20%)합니다.

- ① 70억원 이하 : (재산가액 - 10억원) x 10%

② 70억원 초과 : [(재산가액 - 70억원) x 20%]  
+ (70억원 - 10억원) x 10%]

\* 한도는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름(기업상속공제 참조)

☞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적용 가능합니다.

- 증여자(부외) 요건
  - ①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
  - ② 기업의 지분을 40%(상장사 20%) 이상 보유
- \* 개인기업은 적용 불가능합니다.
- 수증자(13세 이상 자녀 요건)
  - 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(3개월) 가업에 종사
  - ②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 취임

☞ 다만 승계 이후 5년간은 아래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.

※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

- ①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②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기업을 경영해야 합니다.

## 2. 기업상속공제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절세효과는?

- 30년 이상 경영하고 기업재산이 600억 원인 경우 각 제도별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.

### 01 기업상속공제 활용 시 세액비교

구분	일반 상속	기업상속공제
상속재산가액	600억원	600억원
기업상속공제액	-	600억원
일괄공제	5억원	-
과세표준	595억원	0원
세율	50%	-
산출세액	292억원	0

30년 이상 경영  
기업재산 600억



약 292억원의 절세 효과 👍



## 02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시 세액비교

구분	일반 증여	과세특례 적용
증여세 과세가액	600억원	600억원
증여공제	5천만원	10억원
과세표준	599억 5,000만원	590억원
세율	50%	10%(60억 초과분 20%)
산출세액	259억 1,500만원	112억원
신고세액공제	(8억 8,545만원)	-
자진납부세액	286억 2,955만원	112억원

10년 이상 경영  
가업주식 600억



**낮은 세율 적용**  
**약 174억 2,955만원 세액 감소**



### 3.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?

-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서면질의신청 시 국세청에서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드립니다.
  - 또한, 컨설팅 내용대로 조건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
### 4. 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?

-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됩니다.
  - 컨설팅은 세무검증이 아닌 가업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재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'실질적인 조언'이 주된 목적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취득한 세무상 정보는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습니다.

### 5. 대상인원을 20% 확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정 인원은?

- 컨설팅 대상 인원은 신청현황과 일선현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확정할 예정이므로 계획단계에서 구체적 선정인원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
  - 다만, 지난해 150개 대비 20% 증가한 180개 수준 이상이 되도록 선정대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